# 신용카드 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이하 "회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한** 중요 서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제공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 제1항에 의거)
- · 아래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내용과 관련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잘 읽고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i) 회원님,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기억해 주세요!

# 신용카드의 특징과 유사 카드와의 차이점을 확인하세요.

- ·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한 회원의 경제적인 신용을 이용하여, 현금을 즉시 지불하지 않아도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반드시 회원이 직접 발급을 신청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 신용카드는 본인의 신용한도 내에서 미리 상품을 구입하고, 정해진 날짜에 한꺼번에 갚는 상품입니다. 때문에 구매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체크카드나 직불카드와 이용한도나 할부결제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사용 가능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직불카드 가맹점
발급기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	은행
이용한도	신용한도 이내	예금잔액 이내	예금잔액 이내
 결제	선 구매 후 결제	구매 즉시	구매 즉시
할부결제 이용	가능	불가능	불가능

# 불편・불만이 자주 발생해 숙지가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① 카드 뒷면에는 꼭 서명을 해주세요!

회원은 발급된 **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곳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카드를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금액은 회원이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 중 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를 반환해 드립니다.

연회비는 카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연회비 부과 기간이 끝나기 전에 카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는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10영업일(불가피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카드 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반환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알아두세요.

· 신용가드 이용대금 연체 시에는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금융거래가 제약되고 신용점수 등이 하락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 문의사항이나 불편・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 또는 홈페이지, 앱을 통해 카드나 금융 상품에 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사기 피해를 주의하세요.

· 검찰 및 금융사, 가족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금을 이체하거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현대카드 MY COMPANY 지방세결제전용카드 상품 개요

상품명		현대카드 MY COMPANY 지방세결제전용카드		
연회비	국내전용	없음		
단되미	국내외겸용	없음		
신용카드 이용한도		심사 후 부여 예정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한도	비대상

# 2. 현대카드 MY COMPANY 지방세결제전용카드 이용 안내

온·오프라인 지방세 관련 업종에서만 승인 가능 법인명의카드는 CD·ATM 이용 불가

- \* 카드 이용 전에 참고해 주세요
- 자세한 내용 및 이용 조건은 카드 신청 전 현대카드 홈페이지 및 상품설명서, 약관 참고
- \* 부가서비스 이용 시 참고해 주세요
- 1. 이행 책임 : 현대카드는 부가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축소 및 변경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2. 제공 기간 : 카드 발급일로부터 해당 카드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제공됩니다.(단, 실적 조건 충족 시)
- 3. 축소·변경 시 사전 통지 방법
- 부가서비스 축소 변경 사유 발생 시,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이메일,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변경일 6개월 전부터 2개 이상의 방법으로 매달 안내해 드립니다.
- 4. 제공 조건 : 상품 신청 시 서비스 가입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회원께 부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3. 신용카드의 특성

#### · 상품 개요

신용카드는 신용을 담보로 이를 소지한 회원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현금의 즉시 지불없이 구입할 수 있는 증표로서 회원이 발급을 신청하여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 계약기간 및 연장에 관련 사항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며, 카드 표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유효기간이 도래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신용카드를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 이용대금 상환 방법, 금리(수수료) 및 변동 여부

· 회원은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자동이체 결제 방법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즉시결제, 가상계좌(대금결제를 위해 카드사가 회원별로 부여한 입금전용 계좌) 입금 등)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 결제일은 결제 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금리(수수료율)	
일시불결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방식	-	
할부결제	할부기간에 걸쳐 동일 금액을 분할하여 결제하는 방식	(17.5)% ~ (19.5)%	

### · 금리의 변동 여부

- 회원이 할부결제 이용 시 이용 개월 수, 이용실적 및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는 변동 가능합니다.

# 5. 수수료율

- 해외서비스 수수료: 신용카드 해외 이용 시(해외 사이트 거래 포함) 부과하는 수수료
- 수수료율 : (0.18) %

(거래미화금액 ×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0.18%) × 전신환매도율 \*\* 거래미화금액에는 국제브랜드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달러금액

- · 국제브랜드 수수료 : MasterCard/VISA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수수료
- 수수료율 : (1)% ~ (1.4)% (MasterCard/Diners 1%, VISA 1%, AMEX 1.4%) (거래미화금액 × 국제브랜드 수수료율 1%/1.1%/1.4%)) × 전신환매도율

# 6. 연회비 및 연회비 반환

- · 연회비 : 연회비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 · 연회비 청구 : 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신용카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 · 연회비 반환 :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루 단위로 계산하며 회원이 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산정</del>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의 발행·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 발급에 한정)에 소요된 비용
-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예시) 연회비 2만원, 반환금액 산정 제외비용 1만원, 연회비 부과대상일수 200일, 잔여일수 20일인 경우 반환되는 연회비

- ☞ 반환되는 연회비 = (2만원 1만원) × 20일/200일 = 1,000원
- · 연회비 반환기한 :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 7. 계약 해지 시 불이익

·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그 금액을 차감하여 반환하며,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8. 신용카드 이용의 제한

· 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 가맹점(국내 및 해외 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 이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이용 제한 가맹점

- 1. 카지노
- 2. 경마, 경정, 경륜장
- 3. 복권방, 해외가상화폐거래소 등

# 9. 연체이자율 및 연체에 따른 불이익

- · 연체이자율은 [회원별, 이용 상품별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로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금리는 연 3%로 최고 연 20%로 합니다.
- · 단, 연체 발생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하는 경우 : 거래 발생시점 기준 최소기간(2개월)의 유이자할부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 무이자할부 거래를 연체하는 경우 : 거래 발생시점 기준 동일한 할부 계약 기간의 유이자할부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 대출 기준)
- · 연체에 따른 불이익
-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신용도 하락, 연체이자 및 지연배상금 발생, 카드 이용 정지, 카드 이용 한도감액, 카드 이용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 이용대금 결제일 전 이용대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채무자인 회원은 당초 지정한 이용대금 결제일까지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인 회원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이용대금을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 기간 경과 후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등
- ·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등(법인회원 약관 제19조 등에서 정한 사유)
- 카드사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 (참고) 주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 신용카드 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고, 그 연체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등

# 11. 위법계약해지권

- · 카드사가 아래와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 ·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날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서면,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식(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 카드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거절 시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12. 민원 및 분쟁에 관한 사항

- · 신용카드와 관련한 의문사항 또는 불편한 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현대카드 홈페이지(mycompany.hyundaicard.com) 또는 고객센터(1577-60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13. 신용카드 해지 신청 안내

- · 회원은 카드사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신용카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해지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고객센터를 통할 경우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에 가능합니다.
- · 해지 신청 방법
- 현대카드 홈페이지(mycompany.hyundaicard.com) > 총괄관리자 로그인 > My Account > 카드정보 조회 ·변경 > 카드 해지 > 해지카드 선택 및 사유 입력 > 법인인증서/개인인증서/휴대폰인증 > 카드 해지 완료
-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 > ARS 2번(법인 회원) > ARS 1번(이용자) 또는 2번(총괄관리자) > 상담원 연결 >카드 해지 요청
- ㆍ해지 처리 : 신용카드 해지로 인해 탈회가 되는 경우에는 결제 대금 납부, 법인 리워드 소멸 등을 안내하기 위해 상담 직원과 통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4. 개인신용평가대응권

- ·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법인의 경우 관계인(대표자 또는 보증인)이 **자동화평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u>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u>과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u>정정·삭제·재산출을 요구</u>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말합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법인 관계인 개인을 평가하는 행위
- · 관계인(대표자 또는 보증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평가의 결과,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 방법: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 > 2번(법인)
- · 금융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인(대표자 또는 보증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 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관계인(대표자 또는 보증인)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관계인(대표자 또는 보증인)이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

# j 회원님,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 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신용카드 설명서'에 대한 이해 여부 확인 항목입니다.

· <b>연체 시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b> ?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원리금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금융거래가 제약되며 신용점수 등이 하락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연회비 부고	기간0	<b>대한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b>   끝나기 전 카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가서비스 제공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반환금액에서 제외됩니다.	<b>□</b> 예	□아니오
카드 이용한 카드사는 호	!도는 ٦  원의 월	H한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하는 발급을 신청할 때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사의 심사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책정하며, 날 평균 결제 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 적정성을 등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u></u> બા	□아니오
		본인은 현대카드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카드사 직원과 상담하여 본 설명서를 <b>교부</b> 받았으며, 위에, 포함하여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b>설명</b> 을 듣고 <b>이해</b>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 설명한 니	ዘ용을
해당 여부		본인은 카드사 직원으로부터 본 설명서의 <별지>에 기재된 연계·제휴서비스 및 연회비 관련 사항에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l 대하여 충	분히 설명을
		본인은 카드사 직원으로부터 <b>위법계약해지권 등 고객의 권리</b> 에 대하여 충분히 <b>설명</b> 을 듣고 <b>이해</b> 하였	였음을 확인	합니다.
		고객 확인 : 20		(서명/인)

# 핵심설명서

본인은 카드 상품 이용 조건, 국내외겸용카드 사용에 대한 혜택과 연회비 차이 등 상품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연대보증인에게 제시하는데 동의합니다.

회원은 공용카드를 발급 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당해 법인 등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권한이 없는 자가 공용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용자지정카드 사용자는 사용자지정카드를 발급 받은 즉시 그 카드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회원은 사용자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동 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회원의 고의나 과실로 부정 사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회원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자동이체계좌, 전자우편(E-mail) 카드 업무 담당자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을 새로 출시한 후 3년 이내에는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또한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없앨 경우에는 그 세부 내용을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연회비는 카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연회비 부과기간(1년)이 끝나기 이전에 카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 반환금액을 산정한 후 10영업일(불가피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돌려 드립니다. 다만, 카드 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카드 이용한도는 신규 가입 시 회원이 신청한 금액 이내에서 회원의 재무상태, 신용도 등을 감안한 카드사의 심사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되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 위·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회원이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부정 사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 사용 시 결제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단, 일부 카드는 제외합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다만, 회원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 약정금리 + 연체기산금리 3%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회원별, 이용 상품별 차등 적용/법정 최고금리 24% 이내) 단, 연체 발생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

- · 일시불 : 거래 발생시점 기준 최소 기간(2개월)의 유이자할부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3%
- · 무이자할부: 거래 발생시점 기준 동일한 할부 계약 기간의 유이자할부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3%
-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 대출 기준)

# 현대카드 법인회원 약관



#### 제1조 법인 회원 및 카드 사용자

- ① 법인 회원(이하"회원"이라 함)이란 이 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카드사"라 함)에 법인신용카드(이하"카드"라 함)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기업, 기관, 협회, 기타 사업자 등(법인 등)을 말합니다.
- ② 카드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함)란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은사용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카드(이하"공용카드"라함,사용자를 지정한 카드(이하"사용자지정카드"라함 의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사용자지정키는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사용자만이 해당키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2조 회원의 책임

회원은 사용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3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 ① 카드사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대표이사
- 나. 무한책임사원
- 다. 「상법」에 따른 최대주주 라.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② 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③ 연대보증인은 회원의 정당한 카드 이용금액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연대보증인은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여한 총 한도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여, 한도 증액 시 변경된 한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한도 증액 시 카드시는 연대보증인에게 변경된 한도에 대해 시전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 ⑤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카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원의 채무 및 연체이자에 대해서 보증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⑥ 카드의 재발급·갱신 등으로 카드의 유효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⑦ 연대보증인은 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채무(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연회비등)가 해소가 되었을 경우, 보증기간 중이라도 카드사에 서면으로 연대보증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연대보증계약의 해지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 또는 연대보증인은 즉시 카드시에 동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어머니 그 조에 에어지는 시파가 글이글 아가 되는 그는 근데되어난 그 게 가느시에 중 1. 회원의 "영법"의 양도, 양수, 합병, 폐업 또는 기타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대보증인의 퇴직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여 회원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연대보증의 기초가 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있어 연대보증인이 계속하여 회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연대보증인은 동 사유를 들어 카드사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경우, 카드사는 연대보증계약해지 요청서 및 본조 ①항의 해지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영업양도계약서, 주주명부, 퇴사서류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전항에 따라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기간 중 사용된 카드 이용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⑤ 연대보증계약의 해지 시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 ⑥ 연대보증인이 카드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교체 또는 연대보증약정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원은 즉시 카드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과 동등한 자격 이상의 자로 보증인을 교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는 담보를 제공하여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채권이 단절됨이 없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⑦ 회원이 연대보증인 교체, 연대보증약정 해지에 따른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는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괴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카드의 발급 및 관리

- ① 카드사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용카드 또는 사용자지정카드를 발급하며, 발급할 총 매수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카드사가 정합니다.
- ②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카드를 발급하며, 발급 거절 시 거절사유를 통지합니다.
- ③ 회원은 공용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당해 법인 등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권한이 없는 자가 궁용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사용자지정카드 사용자는 사용자지정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그 카드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 회원은 사용자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동 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과 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랑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⑥ 회원은 유효기한이 경과한 카드와 재발급으로 인한 새로운 카드 수령 시 기존의 카드를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해야 합니다.
- ⑦ 제③항부터 제⑥항까지의 이행을 게을리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6조 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 ①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카드의 잔여 유효기한까지는
- ③ 카드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및 대체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 및 대체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갱신 및 대체발급이 거절 시 거절사유를 통지합니다.
- 제의 데 이 이 문 지에(발함에 가는 이 가는 이 가는 이 가는 이 가는 이 가는 이 되었다. ② 유호 기간 만기가 도래한 카드의 회원에 대하여 카드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갱신 발급 합니다. 1. 갱신 발급 예정일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회원의 경우, 갱신 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으로
-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갱신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 하여 드립니다. 위 통보 시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갱신 발급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안내 해드립니다.
- 2. 갱신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관련법에 의거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발급 합니다.
- ⑤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해 카드가 갱신, 교체 또는 대체발급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 제7조 연회비 청구

- ①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카드사가 정한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회원에게 발급된 카드 1매 당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 ②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카드사는 사전에 연회비의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 제7조의2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①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제8조의2에 따라 휴면카드를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1.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② 카드시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사는 제2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 금액의 산정 방식을 함께 해당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④ 카드사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나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① 카드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하거나 카드의 이용 한도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카드이용 정지 사유 발생 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한 가지 방법을 통하여 즉시 고지드리며, 한도 감액 사유 발생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단, 카드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기)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 3. 당사의 카드이용대금 및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4. 피산, 회생의 신청 또는 Work-Out 신청이 있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 5.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6.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7. 영업양도 또는 이전 및 휴업, 폐업 신청이 있는 경우
- 8. 회원 또는 사용자가 퇴사 또는 전직한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경우
- 9. 연대보증인과 관련하여, 제4조 제6항, 제7항 또는 본조 2호, 3호, 4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3. 리테노랑근의 근단에서, 제반조제비용, 제대용 모든 근로 모든 것으로 포함되어 중한 지규모 단어와 퍼뜨리 카드사에 요구에 따라 새로운 연대보증인 또는 그에 상용하는 기치를 갖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② 카드사 또는 회원의 전산망, 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하는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 사용의 일시정지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본 조 제1항, 제3항, 제 8조의2 제2항, 제4항의 사유로 회원의 카드이용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반납하고, 카드사에 그날까지의 채무잔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연대보증인에게 해지사실을 통지합니다.

#### 제8조의2 휴면카드의 연회비 반환 및 해지

- ①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가 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이하 '휴면카드'라 함)로 된 경우,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5항에 따라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 에게 할 것 하는 기계 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등으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
- ③ 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카드사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 ④ 제 3항에 따른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차년도 연회비 청구일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7조의2에 따른 연회비 반환규정을 준용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환금액은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일할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 ⑤ 제3항에 따라 이용정지된 신용카드는 유효기간 종료 시 갱신하거나 대체발급할 수 없으며, 이용정지 상태에서 카드가 부정사용됨으로 인해 회원이 피해를 입을 경우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 ① 회원은 카드를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지정카드에 한하여 외국환관리 규정 등에서 허용한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단기카드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원과 사용자는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기맹점(이하 "해외기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과 사용자는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카드사는 회원 및 기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기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사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단, 회원이 요청하여 제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 제10조 카드 해외이용 등

- ① 회원과 사용자는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 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시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리고 이의신청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국내 및 해외사용 겸용으로 발급된 카드의 경우 해외기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IC칩 비밀번호 (이하"PIN번호"라 함)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 및 일부 해외가맹점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카드의 이용한도
- ① 회원의 이용한도는 법인총한도, 부서(사업장)한도, 카드별 한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카드사와 회원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 ② 카드 이용한도는 신규 가입 시 회원이 신청한 금액 이내에서 회원의 재무상태, 신용도 등을 감안한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별도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③ 카드사는 유효기간 내 및 갱신 발급 시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이메일, 단문 문자메시지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④ 회원이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요청하는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단,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도록 하며,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사유로 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통지하여 드립니다 ⑤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 (ARS), 안내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12조 할부구입

- ① 회원은 카드사에 할부구입 신청 후 카드사로부터 할부판매를 지정 받은 국내가맹점에서 카드사가 정한
- 할부가능금액에 대하여 할부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할부기간은 카드사가 정하여 통보한 최장기간 이내에서 회원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계약에 한하여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수수료를 기산한 할부금을 할부기간동안 결제하여야 합니다.
- ④ 최초 할부금에는 분할 잔여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⑤ 카드사는 연간 할부수수료율 및 100원당 부담하는 할부 개월별 수수료를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⑥ 카드사는 제29조 제2항에 따라서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회원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금융회사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도 변동,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할부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할부철회권

- ① 회원은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1.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 고.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 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3.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 4.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당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5.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 ②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철회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 제14조 할부항변권

- ① 회원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댓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만원 미만의 거래, 회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제외됩니다.
-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2.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3.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② 회원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 ③ 카드사는 서면으로 접수된 소비자의 항변권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나머지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④ 카드사는 소비자가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항변권 관련 분쟁이 해결될 때(소송중이거나 항변권 대상이 이닌 경우 제외)까지 해당 소비자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⑤ 회원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해당기맹점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 제15조 단기카드대출

- ① 회원 등은 국외에서 카드시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카드사의 업무를 취급하는 외국기관의 현금자동지급기 (이하"해외ATM기"라함) 등을 이용하여 시용자지정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해외ATM기 등을 이용하여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경우에는 회원 등이 카드사에 제출한 비밀번호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 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금액의 한도와 수수료 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 등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④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수수료 외에 건당 카드사 또는 카드사 제휴기관 등이 정하는 이용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1. 해외ATM기 등을 통하여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경우
- 2. 그 외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카드사에 추가적 비용부담이 발생하여 그 내용을 회원 또는 사용자지정카드의 사용자에게 알려 드린 경우
- ⑤ 해외ATM기 등의 가동시간, 1회 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횟수는 카드사, 제휴은행 및 외국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⑥ 해외ATM기 등을 이용하여 단기카드대출을 받을 경우,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이 집니다. 단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제16조 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 ①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단 일부카드는 제외합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가 동안 유지되어야하나, 회원이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카드시는 회원이 탈회(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인 경우, 해당 카드사는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 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 발급 시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 1.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 2. 포인트 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 적립 기준, 유효기간, 연간 적립 한도 등에 관한 내용
- 3. 포인트 적립 제하(연체, 적립 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하(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③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의 권의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카드사 또는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2.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3.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④ 카드시는 다음 각 호의 시항을 홈페이지, 모집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합니다.
- 1.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 2. 제3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 ⑤ 카드시가 부기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 우편 또는 팩스에 따른 서신전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그 밖에 상대방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있는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 우편 또는 팩스에 따른 서신전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그 밖에 상대방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1. 제3항 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 2. 제3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 ⑥ 카드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 ⑦ 회원이 무이지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결제대금을 미리 카드시에 지급한 경우에도 카드시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무이지할부 기간이 경과된 일수만큼 포인트를 차감한 후에 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카드 이용 금액 결제

- ① 회원은 카드 이용금액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카드시와 약정한 방법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외화로 이용한 모든 카드 이용대금은 MasterCard, VISA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 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 이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 됩니다. 만약,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③ 제2항의 청구금액에는 MasterCard, VISA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해외이용수수료\*가 포함됩니다. \* 외국환 거래 시 발생되는 해외승인 및 정산처리 비용 등에 대한 해외이용수수료 ④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이용금액에 미탈하여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 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 \* 연체이자 산정 시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 \*\*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연체이율×연체일수/365 (윤년은 366) ⑤ 회원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채권 등의 권리행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해당 권리 행사에 관한 구체적 세부내역을 나열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사본을 첨부하여 회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⑥ 제4항의 연체이자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여 드리며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사는 그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 ② 회원은 기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기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기타 필수기재시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회원이 이용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반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의 순서로 원금에 우선 입금공제 됩니다.
- 함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가 정한 채무변제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⑩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⑪ 할부거래에서 회원이 기한도래 전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경우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월간단위)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②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할 때 입금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초과 입금한 금액을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결제계좌(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의 계좌)로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산장애, 입금인과 회원명이 다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은 제12항에 따른 환급기한까지는 지연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카드사는 환급에 따라 발생하는 타행이체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⑭ 제1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에 카드이용대금과 환급금액과의 상계를 카드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원이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카드시에 취소매출전표가 접수된 경우 카드시는 회원에게 취소된 결제에 대해서는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융통, 기망행위 등 고의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한 취소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18조 자동 이체 결제

- ①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제17조의 결제일에 회원이 지정한 자동이체계좌(단, 통장분실/도난 기타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학 수 있습니다
- MI 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이 회원과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③ 이용대금결제일 현재 잔액부족으로 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영업일 또는 카드사와 회원이 약정한 출금일에 미결제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은행영업 마감시간 이후(16시)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 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즉시결제 또는 송금납부(기상계좌 입금 등)를 통해 당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 ⑤ 제14조 제1항의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 ⑥ 카드사는 회원이 교체 등의 사유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회원이 따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회원의 카드 이용대금을 기존카드의 자동이체 결제계좌에서 자동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 기한이익의 상실

- ①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당연히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채무이행 지체 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 1. 영업양도 또는 이전 및 휴업, 폐업 신청이 있는 경우 2. 회원 또는 사용자가 퇴사 또는 전직한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경우
- 3. 파산, 회생의 신청 또는 Work-Out 신청이 있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이 경우, 카드사는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채무이행 지체 시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 이익의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괴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고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소과하는 경우
- 2.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경우
- ③ 회원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카드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은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어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카드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카드사가 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 제20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① 회원이 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카드사에 이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이용내역·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회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21조 카드의 분실, 도난 신고와 보상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 · 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시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21조 3항 3호에 따릅니다). 다만, 분실 도난 신고 전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 신청 시 커드 1매당 2만원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 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 5호의 경우에도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1. 회원과 사용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 및 이들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5.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6.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7.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 도난 신고가 카드사의 조사결과 회원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회원은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22조 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조 마스크 마리 오는 가는 거시죠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전 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2. 신용카드 등을 양도하게나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③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 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통신판매, 전지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합니다. 단,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 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 21조 3항 3호(카드의 분실, 도난 신고와 보상)에 따릅니다.

#### 제24조 신용정보의 제공, 이용 등

① 카드시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과 사용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기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카드시는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회원과 사용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과 사용자는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지수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 가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카드시에 손실을 입힌 경우

2.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④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25조 변경사항의 통지

① 회원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소, 전화번호, 상호, 대표자, 자동이체계좌, 이메일, 카드 관리 담당자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 계좌 변경 시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카드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③ 카드사는 본 약관 또는 카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변경, 중단, 추가 등 기타 카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알리되, 사용자와 관련된 부가서비스의 변동 등 카드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용자에게도 직접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카드사가 알려 준 내용을 수령하는 즉시 개별 사용자에게도 알려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26조 위반시의 책임

카드시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27조 청약의 철회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28조 위법계약의 해지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29조 약관 변경승인 등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의 경우 3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1. 각종 요율, 수수료, 연회비 등을 인상할 경우

2. 결제방법, 할부기간, 횟수, 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카드사는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30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개인회원 표준약관, 관계 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특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여신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릅니다.

#### 제31조 관합 법원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부칙

1. 제4조 제2항 관련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연대보증 계약에 대한 해지 요구를 하여 처리된 건은 종전 약관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해지조항에 따릅니다.

2. 제7조, 제7조의2 관련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은 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관한 표준약관 제3조, 제4조에 따릅니다.

#### 자동이체 약관

1. 본인(예금주)은 악정된 이용금액결제일을 기준으로 계좌이체일에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z. 자동납부를 위하여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 처리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 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3. 자동납부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납기일 현재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고백의 과실로 인하여 대체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자동납부 신규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과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5. 자동납부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해당은행 및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개시일로 하겠습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인이 자동이체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약관을 준수합니다.

# 체크카드 약관

#### 제1조 히워

....ㅡ ㅡ ㅡ 회원이란 제휴은행에 요구불예금계좌(이하 "결제계좌"라 함)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약관 및 현대카드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함) 법인회원약관을 승인하고 회사에 현대법인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회사로 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분을 말합니다.

### 제2조 카드의 이용 및 제한

① 회원은 카드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 결제계좌의 예금잔액범위 내에서 일시불에 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은행 온라인 마감 시에는 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할부 구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결제계좌 상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계좌의 예금잔액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사고 신고 계좌

2 번전 제하 계자

3. 지급 가능 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계좌

4.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 증명이 발급된 계좌

5. 기타 은행이 정한 지급 제한 사유가 발생한 계좌

④회사는 일정 기간 및 일정금액 이상 카드 이용금액이 있거나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의 동의 하에 일반 카드 회원 자격에 따른 신용 한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제3조 연회비 및 기타수수료

제3고 보내기 못 가져 가고 화원이 특정 서비스 이용 시 또는 별도의 기능을 제공하는 카드, 별도의 특정 기관과 제휴한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및 카드를 추가 발급 받거나 재발급 받는 경우에 회사는 카드 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 및 별도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카드의 이용대금 결제

① 회원이 카드 사용 시 이용대금은 제휴은행의 본인 결제계좌에서 즉시 자동 인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 이용대금을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인출하여 결제하고 인출 사실은 회원의 결제계좌에 기록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이용대금과 매출자료가 상이한 경우와 회원의 별도 확인 요청에 따라 인출 또는 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예금잔액이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회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매출대금의 청구를 접수한 날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익월 20일까지는 원금만 인출되며, 그 이후부터는 연체로 계산하여 변제일까지 다음 산식의 연체료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연체료=연체원금×연체이율×연체일수/365

#### 제5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에 해석에 관하여는 회사의 법인회원약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현대카드 법인카드 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현황

당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는 계약의 체결, 유지, 이행, 관리 및 미케팅을 위해 아래 업체로 제공됨을 알려 드립니다. 업체 추가 또는 변경 시에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 2020년 8월 기준) 첨부한 업체는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업체이므로, 상품별로 제공되는 자세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v
No	제공 목적	제공 업체	제공 항목	이용 및 보유 기간
1	본인인증업체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NHN한국사이버결제, 브이피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생년월일,성별,아이편,마이편,내/외국인여부, 통신사,카드번호 ICCID(USIM일련번호), IMEI (국제이동단말기식별번호)	인증 완료 후 5년
2	본인확인 기관을 통한 연계정보 CI/미수집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주민등록번호	본인확인 6개월 후 삭제
3	신청서 등 문서 관리 업체 (입력·스캔·보관·폐기)	유베이스, 에버영피플	입회신청서, 사후동의서	수신 후 최장 5년
4	카드배송업체	국제, 제니엘시스템, 부천우편집중국, 성호라인	성명, 주소, 직장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사후동의서	배송 완료 후 5년
5	우편물(명세서 등) 배송 및 반송업체	빌포스트, 대성전산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우편번호, 결제계좌 은행명, 계좌번호(일부 마스킹)	배송 완료 후 2일
6	고객상담	효성ITX, 유베이스, 비즈인사이트, 메타넷엠플랫폼, 콜게이트, KEB하나은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궤좌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가족사항, 그 외 고객 상담을 위한 정보 (업무에 따라 마스킹)	민원 및 고객요청업무 처리 기간 동안 보관
7	전산처리 및 유지·보수 업체	현대오토에버, 인지소프트, 인젠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명, 이메일, 결제계좌 은행명, 결제일, 계좌번호, 부서명, 직위명,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기타 (업무에 따라 마스킹)	보관 안함
8	문자메시지·모바일 쿠폰 발송업체	케이티 엠하우스	휴대전화번호, 성명	최대 3개월
9	가맹점업무 관련(중계·전표관리·거래· 보관·전자지급결제 대행) 업체	KIS정보통신, LG유플러스, 금융결제원, 나이스정보통신, 다우데이타, 스마트로, 에스피씨네트웍스, 제이티넷, 케이에스넷, 코레일네트웍스, 코밴, 퍼스트데이터코리아, 한국사이버결제,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티머니, 신세계아이앤씨, KG이니시스, 엘지씨엔에스, 하모니테크, 블루월넛	카드번호, 유효기간, 가맹점정보,사업자정보, 승인정보, 매출정보, 승하차정보 (KIS정보통신에 한함)	거래 완료 후 5년
10	고객정산서비스	우리은행, 신한은행, 금융결제원, LG L'↑, 엘지씨엔에스, 케이에스넷, 이씨뱅크, 우정사업본부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 포함)	데이터 수신 후 5년
11	채권추심업체	NICE신용정보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회사명, 결제정보, 대출번호, 채권잔액, 연체정보, 카드번호, CB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한도, 가맹점 입회정보	연체고객 배분 후 익월 마감까지 보관(최장 60일)
12	유동화자산 실사업체	EY한영회계법인, 삼덕회계법인	개인식별정보(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7번째 자리, 가입신청서 사본).최초입회일자, 결제일, 결제계좌 은행명, 결제방법, 신용거래정보	자산실사보고서 완료시까지 최대 7일
13	쇼핑몰(복지몰) 운영업체	롯데쇼핑, 까사미아, 서울비투비, 아모레퍼시픽, 이알아이, 위닉엔터프라이즈, 대화컴퓨터, 쿠프마케팅, 이니스프리, 비투비마켓	성명,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주소, 고객번호, 카드번호, 카드종류, 이메일, 결제정보, 구매내역, 카드사회원 아이디	회원정보 수령 후 민원/주문 등 처리기간동안 보관
14	법무사(법조치 업무)	김장훈법무사사무소	판결문, 공탁사유신고서	수신 후 3개월
15	법무법인(법률자문)	법무법인 화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카드번호, 녹취파일, 소송입증서류	소송 종료 후 즉시 파기
16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통화품질 모니터링) 업체	고객서비스그룹, 인포뱅크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업무에·따라·마스킹), 상담녹취파일	정보수신 후 최장 1개월
17	가상전화번호 서비스 업체 카드대출 결재중계	세종텔레콤 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수신 후 최장 2주 수신 후 최장 10년
19	가느네골 글세당개 장/단기카드 대출 지급업무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명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씨티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우체국, 코리아세분, 청호이지캐쉬, ATM플러스, BGF캐시넷, 효성티앤에스, 한네트, 한국전자금융	,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비밀번호, 대출관련 정보	TUT 46 10U
50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업체	티머니, 마이비, 스마트로, 삼원FA, 이비카드, 코레일네트웍스, 디지비유페이, 한국도로공사, 게이트뱅크, 에스피씨네트웍스	카드번호, 거래정지여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종료 까지 (단, 법령에 따라 보유기간은 상이힘
21	휴대전화요금·통신요금 카드 자동납부서비스	KT, 엘지유플러스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서비스 종료 후 5년
22	전기요금 카드 자동납부서비스	한국전력공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서비스 종료 후 5년
23	가스요금 카드 자동납부서비스	강원도시가스, 경남에너지, 경동도시가스, 군산도시가스, 귀뚜라미에너지, 대륜이엔에스 대성에너지, 대성청정에너지, 대화도시가스, 목포도시가스, 미래엔서해에너지, 부산도시가스, 삼천리도시가스, 서리벌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 영남에너지서비스 (구미), 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 예스코, 인천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전북도시가스, 전북에너지서비스, 제주도시가스, 중부도시가스, 지에스이, 참빛도시가스, 참빛영동도시가스, 참빛영동도시가스(동해), 참빛원주도시가스, 참빛충북도시가스, 씨엔씨티 에너지, 충청에너지서비스, 코원에너지서비스, 해양도시가스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신청인명, 신청인과의 관, 유효기간	서비스 종료 후 5년
_24	아파트 관리비 카드 자동납부서비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주소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25	초중고 교육비 자동납부	NICE 정보통신, NICE페이먼츠	학생명, 생년월일, 학교명, 신청인명,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성명, 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	자동납부 신청 회수로부터 5년까지
26	사회보험 자동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마스킹)	자동납부 신청 회수로부터 5년까지
27	자금세탁혐의거래 보고 업체	금융정보분석원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영문명, 국적, 전화번호, 주소), 신용거래정보, 가맹점정보	최장 25년
_28	채권매각, 채무조정 지원 및 사후 관리	The state of the s	채권에 포함된 매출내역 및 고객관련정보 일체	매입채권 대출 종료 후 5년
30	멤버십 연회비 자동납부 챗봇서비스 운영	㈜코스트코 코리아 한국아이비엠	성명, 멤버십 번호, 카드번호 일부, 서비스신청 시점 문의 이력	자동납부 신청 회수로부터 5년까지 최대 7일
31	전봇시미스 운영 자동이체 출금 동의 녹취 서비스 업체	인비즈넷	문의 이덕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의대 7일 녹취 전송 후 즉시 삭제
32	간편결제서비스(PayShot) 운영	블루월넛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카드 유효기간, 카드번호, 생년월일, 성별, IP Address, CI, CVV, 비밀번호	고객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카드번호, 유효기간, CVV, 비밀번호
[미귀	  팅 목적 위탁]	I		앞 2자리는 보유 안함)
No	제공 목적	제공 업체	제공 항목	이용 및 보유 기간
1	마케팅 TM 위탁	효성ITX, 유베이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인플러스 시스템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등, 그 외 마케팅을 위한 정보	보유 안함

※ 마케팅 목적 위탁은 동의서 내 선택적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고객에 한함





당사관리용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 출시 (2005년 4월 26일)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또는 제휴업체의 휴업 파산 경영상의 위기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 에 파 납째 이 기르시되 의사에 반아여 해당 두 마시미스를 숙소하 되나 변경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용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카드사가 부가서브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 고지하여 드립니다. 특히 카드 신규 출시 이후 3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6개월 전부터
- 매월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개별 고지 방법: 서면, 우편 또는 팩스에 따른 서신 전달, 전화, 이메일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그밖에 상대방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카드 신청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가이드북은 2021년 5월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거나 현대카드 홈페이지 상품 설명을 참고 바랍니다.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오후 4시) 이후 결제계좌<u>에 입금된 금액에 대</u> 해서는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당일 출금되지 못하여 연체로 처리될 수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 당사 홈페이지, 모바일웹에서 즉시결제 또는 입금전용 (가상)계좌 입금(송금납부)을 통해 당일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대금 납부 관련 자세한 내용은 MY COMPANY 홈페이지, 모바일 웹 > My Account 참고)

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3%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회원별, 이용 상품별 차등 적용/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단, 연체 발생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

- 일시불: 거래 발생시점 기준최소 기간(2개월)의 유이자할부 약정금리
- 무이자할부: 거래 발생시점 기준 동일한 할부 계약 기간 유이자할부 약정금리 +연체가산금리 3%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가계자금대출금리 \*중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 (신규 대출 기준)

일정기간원리금을연체할경우,모든원리금을변제할의무가발생할수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신용평점 등)한 경우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u>서비스에</u>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자세한 내용은 이용전 현대카드 홈페이지 및 상품설명서, 약관 참고

현대카드 홈페이지 현대카드 고객센터

MY COMPANY 홈페이지





# 현대카드 MY COMPANY 지방세결제전용카드

Hyundai Card

# MY COMPANY 지방세결제전용카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카드



#### 연회비 없음

브랜드 국내외겸용(AMEX), 국내전용

고개 이상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할 경우, 보유카드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카드사 간 공유되므로 회원님의 신용등급 및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국제브랜드 수수료 및 해외서비스 수수료는 당월 이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 해외 가맹점 이용 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니, 국제브랜드 수수료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본 가이드북 '카드 이용 유의사항' 참고

#### 카드 이용 유의사항

#### 해외 결제 이용 안내

해외 이용 시(해외사이트 거래 포함) 미화(USD) 기준 거래미화금액에 접수일의 (신한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후,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AMEX 1.4%)와 현대카드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 (0.18%)를 포함하여 원화로 청구됩니다.

단, 국제브랜드 수수료는 국제브랜드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이용 시 청구금액 산출 방법

- \* 해외 이용 시 청구금액=(거래미화금액 x 전신환매도율')+국제브랜드 수수료<sup>2</sup> +해외서비스 수수료<sup>3</sup>
- 1. 전신환매도율: 접수일의 신한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
- 2. 국제브랜드 수수료=(거래미화금액 $\times$ 국제브랜드 수수료율 AMEX 1.4%)
- x전신환매도율
- 3. 해외서비스 수수료=(거래미화금액 $\times$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0.18%)  $\times$ 전신환매도율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거래(DCC) 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현지통화 또는 미화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원화결제차단서비스 신청 방법

현대카드 고객센터 1577-6000

#### 이용 안내

온·오프라인 지방세 관련 업종에서만 승인 가능 법인명의카드는 CD·ATM 이용 불가